

헌법에 ‘환경권’을 명문화한 날을 기념하자…



박 창 근
〈본회 고문 / UNEP Global 500〉

세계 각국에서 환경권의 개념이 대두된 것은 1960년대 말 이후의 일이었고, 가장 먼저 환경권을 내세운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 NEPA)’을 제정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많은 주(州)의 헌법에 환경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미국 외에도 많은 나라에서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환경권을 하위 개별법에 넣고 있다.

즉, 과거 동독은 1968년 헌법에서 자연보호 규정을 두고 1970년에 ‘국토문화법’을 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이행되지 못했으며, 서독의 경우는 1972년 개정된 연방 헌법에서 쓰레기 제거, 공기의 청정유지, 소음방지를 규정하였으나 구체적인 환경권으로는 연결되지 않았고, 각 지방(地方)헌법에서 산발적으로 환경권을 규정하는 데 그쳤다.

그러다가 독일이 통일되어, ‘환경기본법’을 제정하여 환경권을 보장하였고, 1994년 개정된 통일 독일의 헌법은 자연적 생활환경의 보호(20조)를 추가하여, 국가가 미래세대의 자손들에게까지 책임지고 자연적 생활환경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권’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한마디로 대단한 나라가 아닐 수 없다. 지난주 오랜만에 노재식 박사님을 뵙고, 그 대단한 이야기를 나눴다. 어떻게 헌법에 ‘환경권’을 명문화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노재식 박사님 말씀은 이랬다. “한국환경문제협의회(KEAF, 현 逸士會 전신)는 1976년 이래, 격월로 국내 환경분야 조사, 연구사업을 협조, 지원하는 문제를 다뤄 왔었어요. 개헌논의가 한창이던 1979년 하반기였어요. 우리 KEAF 모임에서도 헌법개정 얘기가 나왔는데, 노웅희 박사가 발설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개정헌법에 환



▲노재식 박사(오른편)님과 필자(왼편)가 '환경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찍은 기념사진 10월 28일

경권 조항을 넣으면 어떻겠냐?" 란 의견을 내놓은 것이죠." 동석했던 회원 모두가 대찬성 했죠. 그리고 환경권 조항에 대한 최적 문안을 논의하게 된 거죠.

최종적인 논의를 한 것이 1979년 12월 26일이었어요. 그 날, 한국환경문제협의회의 송년 월례회가 중구 서소문동 소재 서중옥(西衆屋 현, 강서면옥)에서 열렸는데, 그 자리에 당시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정희섭 의원을 초청해서 환경권 조항을 헌법개정안에 신설키 위한 우리들의 시안을 심도있게 논의, 건의했죠…

최종 시안은 고 구연창(具然昌) 박사가 정리했고, 김도창(金道昶. 당시, 유정회 소속 국회의원, 서울대법대교수 및 법제처장 역임)의원이 법리적인 면을 손질했죠…

그렇게 해서, 개정 헌법에 환경권 명문화 안이 국회에서 거의 무수정으로 통과 되었다.

'공해방지법' 이 형이하학적이라고 한다면, '환경권'은 형이상학적인 철학이다.

그러나 그 대단한 철학이 헌법에 명문화 된지도 어언, 30여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헌법에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재식 박사님은 미래를 위해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환경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만큼 머리가 깨다는 것을 축하하고, 환경권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그런 행사는 가질 만하다고 의견을 주셨다.

따라서 내년부터, 환경권이 명문화된 날을 정부 차원으로 어렵다면, 환경부나 민간 환경단체나, 환경문제 전문가들이 나서서, 세미나 등의 기념행사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 누구보다도, 환경문제 일선에서 애쓰는 우리 환경기술인들이 앞장서는 것은 어떨까… 그러기를 바라는 것은 그 어느 환경문제 전문가 보다, 환경권이 가장 피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환경기술인이기 때문이다. ☺